발간등록번호
중앙 2017-3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서울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I TEL 02-735-7510 FAX 02-735-7536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발간등록번호 중앙 2017-3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

인 쇄 2017년 10월
발 행 2017년 10월
발행인 윤선영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단장
발행처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주 소 (04505) 서울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전 화 02)735-7510
팩 스 02)735-7536
디자인 환크리에이티브컴퍼니 02)741-7402

※ 사전 승인 없이 가이드라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가이드라인 개요

최근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철저한 권력 구조에 의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패턴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달리 고용구조가 아닌 주로 일대일 관계에서 발생하는 등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Part 1 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현황 및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며 문화예술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서술하였다.

Part 2 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 법적절차에 따른 유의사항 및 피해 사례별 Q&A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과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서술하였다. 단, Part 2에 서술된 법률정보는 본 가이드라인 구성상 간략하게 정리된 부분이 있고 '법률적 대응'은 피해자 지원에 있어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 이에 본 가이드라인을 읽는 성폭력 피해지원 전문가들이 단순히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아닌지의 문제로만 귀결하는 것은 경계하기를 바란다.

Part 3 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해 안내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이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대한 성폭력 피해지원 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고 문화예술계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 가이드라인을 읽는 성폭력 피해지원 전문가들이 문화예술계 내 성차별 구조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여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마음을 모으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Contents

Part 1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이해

01. 서론 06
02. 문화예술계 성폭력 현황 07
03.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성 08

Part 2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법률가이드

01. 고소 준비 및 고소 단계 유의사항 16
02. 수사 및 재판 단계 유의사항 17
03.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례 유형별 질의 19

Part 3
피해자 지원기관 연락처

01. 해바라기센터 26
02. 국비지원 성폭력 상담소(2017년 기준) 29
03. 기타 지원기관 35

도움 주신 분들 38

Part 1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이해

01. 서론
02. 문화예술계 성폭력 현황
03.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성

Part 1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이해

01. 서론

· 2016년 말 #OO_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우리나라 예술 역사상 처음으로 미술계 내의 성폭력에 관한 공론화 계기를 만들었다. 먼저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가 용기 내 트위터로 고백을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 A 큐레이터가 저지른 여러 성범죄 사례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터져 나왔다. 큐레이터들의 성폭력, 선배·동료 남자 작가들의 성폭력, 대학교수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이 계속되었다. 특히 A 큐레이터 사건의 경우 며칠 사이에 150여 명의 피해자가 나왔고, 큐레이터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활동을 중단했으며, B 미술관은 그를 사직 처리했다.[1)]

·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 남성 예술가들은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 다수는 아직 예술계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 중이다. 이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특이점 중 하나로 프리랜서 성격이 강한 예술인들이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사회 안에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 인맥의 폐쇄성과 도제식 교육으로 인해 고발이 힘들다는 점이다. 또한 남성 예술가나 교수가 낭만주의적 예술가상(象)을 빌어 예술가는 성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주입시키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일이 많았다.

· 이에 본 가이드라인은 성폭력 피해지원 전문가들이 문화예술계 피해자 지원 시, 숙지해야 할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문화예술계의 독특한 구조와 문화가 어떻게 성폭력과 연결되는지 이해하려는 자세는 피해자들과 소통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2)]

1) VOSTOK(2016). 「특집 <페미니즘: 반격하는 여성들> - 레포트, '사진계 내 성폭력 설문조사'」 p. 116-121.
2) 전희경(2017).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한국여성민우회.

02. 문화예술계 성폭력 현황

· #OO_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 공론화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술가들이 모여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여성문화예술연합[3)]이 2016년 말부터 문화예술계 내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한 사례는 18건이며, 18건 중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건은 8건인데 반해, 15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

· 2016년 수많은 고발이 이어지자, 문화예술계에서는 2016-2017년 자체적으로 설문 조사[4)]를 실시·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는 큐레이터나 선배 작가 혹은 교수나 강사가 대부분이었고, 피해자의 연령은 20대에서 30대 초중반에 집중되어 있었다. 출판계의 경우 가해자는 사업주와 직장상사가 대부분이었다.

· 그러나 성폭력을 겪은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사진계 성폭력 설문조사[5)] 참여자 385명 중 320명의 피해자 가운데 '참고 넘어갔다'는 사람의 비율은 80.9%(259명)였다. 그 이유는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소문과 평판에 대한 두려움',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의 순이었다. 여성예술인연대(AWA)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4)]도 마찬가지로 50건 중 신고한 건수는 5건이었고, 피해자 대부분은 신고를 해도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본인만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같아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3) 문학, 미술, 디자인 등 9개 여성주의 예술 단체들로 여성예술인연대 'AWA', 여성 디자이너 정책연구모임 'WOO', '푸시텔', #문단 내_성폭력에 반대하는 문학 작가들, '사진계성폭력감시자연대', 여성 전시기획자들의 모임 'Gathering A', #부산문화예술계 내_성폭력 대책모임, 언론노조 출판지부, 페미니스트 영화·영상인 모임 '찍는 페미'가 연대함.
4) 본 조사는 여성예술인연합 Association of Women Artists(AWA)에서 2017년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임. 총 51명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로 19-25세 이하 31.4%, 26-30세 이하 21.6%, 30세 이하 53%, 31-35세 이하 31%, 기타 미성년자도 포함되었으며, 피해 당사자 종사 장르는 시각예술 49%, 영화 37.3%, 사진 3.9%, 공연예술 3.9% 등의 분포로 나타남.
5) 본 조사는 VOSTOK 편집부에서 사진계 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총 385명(여성 286명, 남성 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로 응답자 중 과반수이상이 20대(59.2%)였으며, 사진 관련 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33.4%, 사진가 29.1%, 사진기자 2.4%, 기타 26.2%(일반인 모델 및 전문 모델 등)가 참여함.

03.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성 - 예술계 성폭력은 공동체 내 성폭력

1. 예술가가 되고 싶은, 예술가로 남고 싶은 사람들

· "그런 질 나쁜 남자 작가 안 만나려면 미술은 취미로 하고, 돈 버는 일을 해보는 것은 어때요?" 문화예술계 피해자가 피해지원 요청 시, 들은 말이다. 이는 문화예술계 전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은 지하철이나 길에서 당한 성추행과는 다른 종류의 성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 즉 문화예술계 내의 사람들은 문화예술이라는 복잡한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문화예술 공동체 내에 속하고 싶어 하며, 자신이 원해서 그 직업에 평생 투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문제도 그 안에서 공론화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문화예술계 내의 성폭력은 공동체 내 성폭력[6]으로 보아야 한다.

·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재능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혹은 평생 기량을 닦고 연마해야 한다. 반드시 예술가가 되어 예술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있다. 특히 클래식음악, 국악, 무용, 순수미술은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예인 사업이 대형 시장화되면서 청소년 연습생으로 경력을 시작하는 경우도 흔해지고 있다. 또한 예술고등학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문학이나 애니메이션, 디자인, 연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소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오랜 시간 일궈 온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으며,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문화예술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성악을 전공한 음악교사 D는 성악가가 되고 싶었던 여고생 C를 성추행했고, D를 어떻게든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C는 진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7] 이처럼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는 문화예술계에서 떠나지 않는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투신해 왔던 문화예술계를 떠나 다시는 창작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

2. 남성 중심적 문화예술계 권력 구조와 예술 학교의 폐쇄적 인맥

· 문화예술계 내의 권력은 고용관계로 정형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력, 인맥을 통한 모호하고 폭넓은 남성 중심적 문화로 가해자들이 서로 옹호하고 그 무리 안의 성폭력을 정당화해 왔다. A 큐레이터의 경우, 자신이 관여하는 전시를 미끼로 수많은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시에는 교묘한 보복까지 하여 고발당하였다.[8]

6) 여기서 '공동체'란 노동조합, 시민단체, 대학 학생조직, 주민조직 등 일정한 '사회적 가치'(가령 정의, 진보, 개혁, 민주주의 등)가 공동체의 성격에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전희경(2017).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한국여성민우회.].

7) 「10대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를 고발합니다」, 여성신문 2016. 10. 31. 기사.
8) 「미술계도 성추행 논란..큐레이터 함○○ 사과문 게재」, 중앙일보 2016. 10. 30. 기사.

· 문화예술계는 대부분 10년 이상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면서 인지도를 높여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력이 없을 경우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누구와 인연이 있는가' 등 작품의 질 자체와는 상관없는 인적관계 및 주변적 요소가 작가의 초기 인지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인맥을 쌓기 위하여, 혹은 안면을 트기 위하여 위험한 것을 감내하고도 회식이나 술자리 등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 왜 나갔냐", "너도 마음이 있던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 연예인 지망생들에 대한 기획사 대표들의 권력은 절대적이다. 연예기획사 사장 E는 걸그룹 지망생들에게 술접대는 물론 성관계까지 강압했으며 전속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쉽게 그만두지도 못하게 했다.[9] 사진계의 경우, 남성 사진작가가 예술가 지망생에게 자기 사진의 누드모델을 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10]

· 영화계도 대부분 감독과 스텝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 있어도 고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영화 스텝 중 어린 여성은 성희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나 업계에서 추방될까봐 보통 '내가 참고 말자'는 태도로 넘어가고 만다.

9) 「"걸그룹 데뷔 약속했는데…" 연습생에 술접대 강요」 SBS 2017. 3. 16. 뉴스
10) 여성예술인연합 AWA(2017) 자체 설문조사.

· 또한 문화예술계는 아동, 청소년기부터 도제식 교육을 하는 분야인 만큼 미성년자 피해가 빈번하다. 학원, 개인레슨 연습실 같은 사설기관은 개인적이고 밀폐된 공간이라 성폭력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11] 특히 대학입시를 앞둔 청소년이나 예술대학 학생은 주변 예술가, 선생님, 교수님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영향력은 곧 초기 예술관 형성과 직결되기도 하는데 이를 악용한 가해 교사나 교수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피해자가 인식하게 하며 '자발적 연애'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12]

· 가해자인 교사나 교수들에 대한 사건이 공론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데에는 폐쇄적 인맥과 남성 중심의 교수진 구성도 한몫을 하고 있다. 예술대학 학생의 80% 이상이 여성이지만 막상 교수의 80%는 남성이다. 서울 시내 예술대학 교수진은 70% 이상이 같은 학교 출신으로, 남성 중심의 학연 문화가 학내 교수 성폭력 사건 노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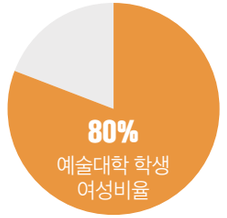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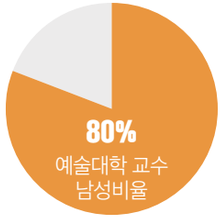

11) 라라(2017). 국악계 내 성폭력 실태.
12) 여성예술인연합 AWA(2017) 자체 설문조사.
13) 6699press 편집부(2016). 「한국, 여성, 그래픽 디자이너 11」

3.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와 혐오의 자유

· 예술 역사상 여성은 예술가이기보다는 벗은 몸, 뮤즈와 같은 수동적 대상에 불과한 경향이 있다. 저명한 페미니즘 예술가 집단 <게릴라 걸즈>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욕 현대미술관 누드의 85%는 여성인 반면 여성 예술가의 작품은 5% 미만밖에 전시 되지 않았다.[14]

· "예술가가 되려면 성적으로 탈선해봐야 한다", "예술가는 색기가 있어야 한다." 등 다수의 남성 예술가들은 강단에서, 학교에서, 전시장 뒷풀이에서 성적 자유를 곧 예술적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로 등치시켜, 자신과의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정당화했다.

· 남배우 F는 영화 촬영 과정에서 감독, 피고인, 여배우 G(피해자)가 사전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추행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남배우 F를 고소했지만 1심 법원은 남배우 F가 감독이 지시한 대로 '배역에 몰입해 연기'했고 '업무상 행위'이므로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남성 카르텔이 여성 배우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상화하였으며 심지어 성폭력을 정당화한 것이다.[15]

· 사회학자 김현미(2002)는 "저항성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대중문화의 현장에서 성폭력은 곧잘 '성해방'의 표현으로 번역된다"고 지적한다. 그들이 주도하는 '저항성'은 기성세대가 가진 권력과 물질적 상징은 비웃지만 자신이 남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누리는 기득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감각하다.[16]

14) Guerrilla girls(1989). DO WOMEN STILL HAVE TO BE NAKED TO GET INTO THE MET. MUSEUM?.
15) 「'영화계 성폭력, 예술 행위로 포장한 범죄다' [토론회] 남성 위주 구조화된 영화판 등 성폭력 용인되는 원인 짚어야」, 미디어오늘 2017. 1. 17. 기사. (편집자 주 : 본 가이드라인 집필 이후인 2017년 10월 해당 사건의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짐. 이에 남배우 F가 상고장을 제출하여 본 사건은 현재 진행 중임)
16) 김현미(2002). 「대중문화가 '낭만화'하고 있는 성폭력과 죽음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 여성과 평화 2002. 5.

4. 문화예술가의 경제적 불안정성

· 문화예술계 특징 중 하나는 경제적 불안정성이다. 문화부가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의 67%가 월평균수입 100만원 이하였다. 국민연금(56.8%)과 고용보험(25.1%) 가입률도 저조했다.[17] 2011년 인디뮤지션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이진원 씨, 한국종합예술학교를 졸업한 극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 및 지병으로 홀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2011년 11월에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많은 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탓에 복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중견 연극인들이 2015년 생활고에 홀로 죽음을 맞았으며,[18] 아직 등단하지 않은 지망생, 전시를 하지 못한 지망생의 경우는 지원 해당사항이 없어 선택복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빌미로 성폭력이 일어나기도 한다. 여성예술가 H는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교수 I가 아르바이트를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했다. H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어렵사리 얻은 강사 자리를 잃을까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밤샘 작업을 하는 도중 I가 강간하려 했지만 거부했고, 이후 H는 다시는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못했다. 가수 지망생 J는 유명 가수 K로부터 자신이 곡을 썼으니 가이드 녹음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아르바이트 자리로 생각한 J는 작업실을 방문해 노래를 했다. 그러나 K는 성추행을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너의 실력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아르바이트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19]

· 또한 대부분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예술가라는 본업으로는 생활이 힘들어 여러 가지 부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을 겪어도 경제적 여건이 불안하여 소송을 이어가지 못하거나, 상담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17) 「예술가의 수명」, 한국일보 2016. 3. 7. 기사.
18) 「무명배우의 잇단 죽음…'최고은법'은 왜 '구조' 못했나」, 한겨레 2015. 6. 24. 기사.
19) 여성예술인연합 AWA(2017) 자체 설문조사.

Part 2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법률가이드

01. 고소 준비 및 고소 단계 유의사항
02. 수사 및 재판 단계 유의사항
03.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례 유형별 질의

01. 고소 준비 및 고소 단계 유의사항

Q1.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는 사건이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임을 피해자에게 안내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에도 기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인 경우에,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Q2. 성폭력 직후 가해자의 계속되는 연락에 피해자가 향후 증거 수집을 위해 녹취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점을 유의시켜야 할까요?

A : 수사에 필요한 내용을 녹취해야 하는데 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어떤 내용이 수사에 필요한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녹취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상주 경찰관과 상의한 후 범죄 입증을 위해 녹취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을 녹음해야하는지를 상의하고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수사 및 재판 단계 유의사항

명예훼손 등 피소 시

Q3.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를 주어야 도움이 될까요?

A :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면 우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으로 고소한 사실 자체를 가지고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경우, 통상 성폭력 사건이 유죄로 판결나면 명예훼손은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않고 SNS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가해자 이름을 익명으로 표시하고, 내용 전체를 읽어봐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도록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실명을 써서 폭로했다고 하여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 후부터는 폭로가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 목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SNS 폭로보다는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Q4. 피해자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했을 경우,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나요?

A : 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 가해자의 성폭력이 유죄라고 판결되면 피해자의 무고는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불기소, 무죄로 끝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무조건 무고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보복 및 위증

Q5. 피해자의 집 근처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지인 등이 상주할 경우(자주 찾아오는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A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사정을 잘 설명한 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가해자 측 지인들이 법정에서 가해자 편을 들어 거짓으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힘들어 합니다. 피해자를 도울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A : 허위증언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허위증언을 한 가해자 측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도 허위증언임을 알리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고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피해자의 페이스북 고발 글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가해자가 일일이 댓글을 달아 "너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A : "고소하겠다"는 표현 자체는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을 예고하는 것뿐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에 덧붙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짜 고소를 해오면 그때 무고로 맞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03.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례 유형별 질의

신체 노출 위협

Q8. A는 사진작가가 작품을 위해 누드 사진 모델을 꼭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모델을 했습니다. 촬영 전, 얼굴은 찍지 않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 얼굴이 나왔고, A인 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 필름 폐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A : 이론적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고 필름을 압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입증하려면, 사전에 누드 촬영은 동의하였으나 얼굴은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법률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9. B는 남성 작가와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B와 촬영한 섹스 비디오를 작품이라고 미술관에 설치하고 상영했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체 및 신체 부위가 클로즈업 되었고, B는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영상을 대중이 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전시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성폭력특별법위반으로 고소하고, 그 영상물은 압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10. 어떤 작가가 자신이 성관계를 했던 여성들의 나체 및 성관계 사진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고발할 수 있나요?

A : 만일 위 사진과 동영상이 촬영된 여성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것이라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고,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사적 관계의 작품화

Q11. 유명 영화감독이 C가 D라는 유부남과 연애한 사실 및 과정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C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 그 영화가 C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정도로 흡사하며 심지어 주인공의 이니셜도 C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영화 상영을 금지하거나 감독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도용된 사적관계를 작품화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영화 상영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권력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

Q12. 한 교수가 E에게 같이 자자고 손을 잡고 모텔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E가 그 과정을 녹취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시,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를 주어야 도움이 될까요?

A : 승소가능성 있습니다.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고소과정의 안내와 피해자의 권리 고지, 그리고 증거자료의 목록화 및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진술 등을 해보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Q13. F는 업무상 일 때문에 한 감독의 작업실에 갔다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작업실에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성관계 동의로 읽힐 여지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불가피하게 업무상 감독의 작업실에 갈 경우 어떤 증거나 기록을 남겨 놓아야 하나요?

A : 업무 관련하여 작업실에 방문한 것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방차원에서 감독의 작업실에 갈 때에는 친한 친구나 동료에게 업무 때문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려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작업실에는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증거 수집이 용이하고, 피해 발생 후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작업실을 드나들면 추가 피해를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및 업무 관련 분쟁 대응

Q14. G는 영화를 찍다가 성추행을 당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G가 계약을 파기하게 되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구제 방법이 있나요?

A : 범죄피해를 입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에게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15. H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실에서 술에 취한 한 작가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지만 앞으로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는 게 꺼려져서 보증금 문제도 걸려 있고 불편하지만 작업실에서 나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에게 작업실 퇴거를 요구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A : 가해자를 고소하고 퇴거 요구를 하거나, 고소하지 않고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거를 요구하는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가해 / 언어폭력

Q16. 가해자의 친구는, 가해자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I에게 "걸레 같은 년"이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2차 가해자로 가해자의 친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 공연히 타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맥락에 따라 "걸레 같은 년"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여성으로 폄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글을 캡쳐한 후,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17. 전시 뒤풀이에서 한 작가가 사람들에게 "너희 J작가 알아? 그 여자애 문란하고, 내 친구 꼬셔서 잤잖아. 아무하고나 자는 애야."라고 말했습니다. J 작가는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 있던 후배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친구와 사귄 적도 잠자리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 그런 발언을 녹음한 녹취가 있거나, 뒷풀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나가 진술을 해줘야 합니다.

성추행 및 성희롱 성립 여부

Q18. 어떤 예술대학 강사가 수업 시간에 "성적 해방을 해야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며, 성경험을 많이 하라고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것도 성희롱인가요?

A : 성희롱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경험을 많이 하라는 발언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강사를 성희롱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사의 발언을 녹취하거나 그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를 받아서 학교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발언의 횟수, 내용에 따라 징계의 정도는 달리 결정됩니다.

Q19. 어떤 작가가 지속적으로 같이 자자고 조릅니다. 거절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 조릅니다. 이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 :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녹음이 있거나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성희롱으로 징계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업무상 관련성이 있고 가해자가 속한 회사나 학교가 있다면 징계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사회적 처벌 / 공동체적 대응

Q20. 성폭력, 성추행 가해자가 범죄 후에도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술가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라 업계 내 규제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문화예술계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고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제재할 방법은 당사자에게 활동 자제요청을 하거나 그가 일하는 회사나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약을 파기하도록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회사나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방법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소의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없다면 실무상 프리랜서인 가해자의 활동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Q21.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공론화하지 못하고 연대하는 단체에 사건을 제보한 경우, 단체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단체 존립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공론화의 절차는 무엇입니까?

A : 단체 명의로 공론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충실히 조사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사건에 대해 공평하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에 진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 단체의 존립 목적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야 하므로 그렇지 않다면 여성단체와 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Part 3

피해자 지원기관 연락처

01. 해바라기센터
02. 국비지원 성폭력 상담소(2017년 기준)
03. 기타 지원기관

Part 3 피해자 지원기관 연락처

01. 해바라기센터 연락처

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형

센터명	주소	위탁병원	연락처
서울동부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1층	경찰병원	02-3400-1700
서울남부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 희망관 2층	보라매병원	02-870-1700
부산동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1층	부산의료원	051-501-9117
대구	대구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건강증진센터 2층	대구의료원	053-556-8117
인천동부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	032-582-1170
인천북부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032-280-5678
광주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2층	조선대병원	062-225-3117
경기북동부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본관 3층	의정부의료원	031-874-3117
경기서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6 한도병원 제2별관 2층	한도병원	031-364-8117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48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	043-272-7117
충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1층	단국대병원	041-567-7117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지하 1층	전북대병원	063-278-0117
전남동부	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 순천성가롤로병원 별관	성가롤로병원	061-727-0117
경북북부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지하 1층	안동의료원	054-843-1117
경북서부	경북 김천시 신음1길12	김천제일병원	054-439-9600
경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마산의료원 지하 1층	마산의료원	055-245-8117

해바라기센터 (아동)

센터명	주소	위탁병원	연락처
서울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구프라자 7층	연세의료원	02-3274-1375
대구	대구 중구 동덕로125(삼덕동2가) 금화빌딩 5층	경북대병원	053-421-1375
인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9 한성빌딩 2층	가천대 길병원	032-423-1375
광주	광주 동구 제봉로 57 웰크리닉 4층	전남대병원	062-232-1375
경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5층	분당차병원	031-708-1375
충북	충북 충주시 봉현로 222 (교현동, 보성빌딩 4층)	건국대 충주병원	043-857-1375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뱅크빌딩 2층	전북대병원	063-246-1375
경남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본관 지하1층	경상대병원	055-754-1375

해바라기센터 통합형

센터명	주소	위탁병원	연락처
서울	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숭빌딩 2층	서울대병원	본관 : 02-3672-0365 *별관 : 02-745-0366, 0367
서울북부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삼육서울병원	02-3390-4145
서울중부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 6가 18-79)	국립 중앙의료원	02-2266-8276 02-2276-2056
부산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융합의학연구동 6층	부산대병원	051-244-1375
대전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충남대병원	042-280-8436

센터명	주소	위탁병원	연락처
울산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울산병원 8층	울산병원	052-265-1375
경기남부	거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79번길 7, 도병원약국 3층	아주대병원	031-217-9117
	통합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 2층		*별관 : 031-215-1117
			응급 : 031-216-1117
경기북서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층	명지병원	*통합 : 031-816-1375
			응급 : 031-816-1374
강원서부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지하2층	강원대병원	033-252-1375
강원동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 42 강릉동인병원 별관	강릉동인병원	033-652-9840
전남서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3 목포중앙병원 별관5층	목포중앙병원	061-285-1375
경북동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포항성모병원 성루가관 지하3층	포항성모병원	054-278-1375
제주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 2층 (연동, 한라병원)	한라병원	본관 : 064-749-5117
	제주 제주시 남녕로 5-3 3층		*별관 : 064-749-6117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바라기센터(아동)은 평일 09:00 ~ 18:00 운영**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 조사, 법률 지원, 사회적 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

02. 국비지원 성폭력상담소 연락처(전국 104개소)

권역	상담소 명	주소	연락처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02-338-2890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02-739-8858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29길 35, 208(중화동, 태능시장주상복합빌딩)	02-902-3356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9길 31, 1층 102호	02-883-9285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57 려산빌딩 지하1층	02-2658-1366
	이레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25 (서암빌딩, 4층)	02-3281-1366
	벧엘케어상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02, 401호	02-896-0401, 0408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5 마길 8-13	02-825-1273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402호(여의도동, 이룸센터)	02-3675-4465~6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410호	02-3013-1399
	한국여성의전화 부설성폭력 상담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6길 8-4(녹번동)	02-3156-5463
	탁틴내일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7길 18(창천동)	02-338-2890
부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부산장애인회관 4층	051-583-7735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허브스카이 A3동 5,6호	051-558-8832~4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92 (광안동)	051-753-1377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25 3층(남천동)	051-624-5584

권역	상담소 명	주소	연락처
부산	기장열린상담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90, 303호	051-531-1366
대구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성폭력상담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46길 16	053-566-1900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대구성폭력상담소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31	053-471-6484
인천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42 (간석동34-4)	032-451-4093~4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707호 (간석3동 26-3)	032-424-1366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37-10, 107동 101호 (부평동, 스카이빌라트)	032-506-5479
광주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3 삼호센터별관 102호	062-521-1366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816 (주월동)	062-673-1366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82번길 8 (사동)	062-654-1366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404번길 15(농성동) (17.4.17 변경수리)	062-363-0485
대전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76번길 15-4, 322호(판암동, 동진프라자)	042-637-1366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98 (오류동)	042-712-1367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28 (대흥동)	042-254-3038~9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서로9. 3층	042-223-8866
울산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27	052-245-1366
	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삼성빌딩 505호	052-265-5570

권역	상담소 명	주소	연락처
울산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104	052-246-1368
세종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 5길 75 여성회관1층	044-862-9191
경기	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100 (태평동, 동호빌딩 6층)	031-751-2050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92 (태평동, 주민태평동락 303호)	031-755-2527
	용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곡로 8번길 11	031-281-1366
	한국여성의전화부천지부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중동) 현해탑빌딩 302	032-328-9713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광덕서로66 412호	031-413-9414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76 (비산동) 정화빌딩 6층	031-442-5385
	평택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23-1 2층	031-618-1366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길 13(송정동, 3층)	031-797-7031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0-33, 802호	031-396-0236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꿈머울푸러저 202호	031-462-1366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205번길 27 (덕풍동, 서해상가 4층)	031-796-1274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46, 301호(금곡동, 양지빌딩)	031-558-1366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426, 4층 (금오동)	031-840-9203
	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2층)	031-946-2096
	포천가족성상담센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71 (정우빌딩 3층)	031-542-3171

권역	상담소 명	주소	연락처
경기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5	031-867-3100
	연천행복뜰상담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 131	031-832-1315
강원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454, (포남동, 강릉여성문화센터 2층)	033-652-9555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188	033-535-4943
	(사)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307	033-637-1988
	영월성폭력상담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4	033-375-1366
	아라리가족성상담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1길 38	033-563-8666
충북	사)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57 (서운동) 3층	043-252-0968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6번 길 15-2 (서운동)	043-224-9414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0 (복대동)	043-263-2000
	제천성폭력상담소	충북 제천시 내제로 5길 12(명동)	043-652-0049, 653-1331
	충주성폭력상담소	충북 충주시 예성로 135	043-845-1366
충남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66 (영성동)	041-564-0026~7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고재20길 12(2층) (원성동)	041-561-0303, 20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두정동)	041-592-6500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충남 공주시 신금1길 44-11, 4층	041-852-1950
	아산가정성상담지원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순천향로 1060	041-546-9191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15번길 20-14	041-541-1514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충남 홍성읍 충서로 1121-32 (2층)	041-631-3939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문4길 31-6	041-675-9536

권역	상담소 명	주소	연락처
전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성폭력상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12-4, 3층	063-236-0151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봉3길 6	063-223-3015
	군산성폭력상담소	전북 군산시 구영7길 8	063-442-1570
	익산 성폭력상담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5층)	063-834-1366
	성폭력예방치료센타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전북 정읍시 충정로 273 (대율빌딩 5층)	063-537-1366
	성폭력예방치료센타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전북 김제시 금성로 53-1	063-546-8366
전남	목포여성상담센터	전남 목포시 신흥로83번길 5	061-285-1366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남 목포시 영산로 361	061-283-4767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 여수시 어항로 6	061-666-4001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 순천시 서문성터길 104	061-753-1366
	나주여성상담센터	전남 나주시 중앙로 50	061-337-1366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18 2층	061-381-1366
	해남성폭력상담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30	061-533-9181
	무안여성상담센터	전남 무안군 무안로 522-1	061-454-1360
	보두마상담센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외대화길 27 하나캐슬 203동 101호	061-324-1388
경북	(사)한마음부설 한마음상담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로 40번길 8-3 (죽도동)	054-277-9540
	경주다움 성폭력상담센터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2길 25	054-777-1366 054-777-1520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 안동시 태화중앙로 60-1 (태화동)	054-843-1366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경북 구미시 광평길 41(3층)	054-463-1386 054-463-1388

권역	상담소 명	주소	연락처
경북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 구미시 문장로 12길 18-1, 1층(도량동)	054-443-1366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경북 상주시 영남제일로 1368	054-534-5999
	문경열린종합상담소	경북 문경시 남부3길 19	054-555-8207
	로뎀성폭력상담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766	053-853-5276
	칠곡종합상담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69-35	054-973-8290
경남	창원성폭력상담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토월복합상가 725호	055-283-8322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0길 56 가고파오피스텔 804호 (오동동)	055-241-5041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0길 56 가고파오피스텔 504호 (오동동)	055-244-8400
	진해성폭력상담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11번길 16(풍호동)	055-546-8322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경남 통영시 동충1길 4(항남동)	055-648-2070
	사천성가족상담센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 126(3층)	055-852-9040
	김해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 상담소	경남 김해시 호계로 422번길 34-5 (부원동)	055-329-6453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 거창군 수남로 2193-40 거창문화원 3층	055-944-1828
제주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시 관덕로8길 32(삼도이동)	064-756-4008
	제주YWCA 통합상담소	제주시 삼무로11길	064-748-3040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시 복지로 3길 1-4(도남동)	064-753-4980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담 및 각종 지원이 이뤄짐

· 피해자 및 가족 지속상담
· 수사·재판 절차 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 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 지원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03. 기타 지원기관

긴급상담
- 여성긴급전화(1366)
  - 1년 365일 24시간 운영
- 청소년 상담전화(1388)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 의료진이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참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보호, 상담, 수사·재판 절차 지원, 의료지원서비스 연계, 자립·자활 지원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참조

의료(상담 및 평가 등)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심리치유연계: 스마일센터)
-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CARE팀(1566-0112)

기타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 예술인 신문고

MEMO

MEMO

도움 주신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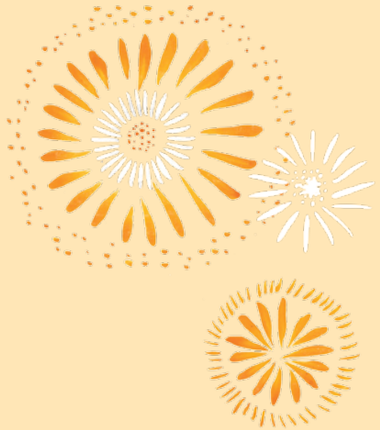

주집필자

Part 1

- 박은선(여성문화예술연합)

Part 2

- 이선경(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

부집필자

Part 1

- 유재인(여성문화예술연합)
- 김영글(여성문화예술연합)

※ 송보경(여성문화예술연합/부분 참여)

감수자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기획 및 편집자

- 장미정(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교육연구팀장)
- 김보경(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교육연구팀원)